

**MSS그룹
준법통제 규정**

준법통제 규정

제1조(목적) MSS그룹(이하 ‘회사’ 라 함)는 법령을 준수하고 기업윤리를 구현하여,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기업 경영을 도모한다. 이를 위하여 회사는 고객, 주주, 협력사 및 지역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준법통제 규정(이하 ‘본 규정’ 이라 함)을 제정 및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) ①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모든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.

② 본 규정과 관련있는 회사의 각종 규정이나 규칙 등은 본 규정의 내용이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며,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본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.

제3조(조직 구성, 업무 분장 등) ① 준법통제를 위한 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은 준법통제 업무의 효율성과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이 확보되고, 관련 임직원의 책임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도록 한다.

②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. 아울러 대표이사 및 준법감시인이 이사회의 결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준법통제를 운영하는지를 감독한다.

③ 대표이사는 본 규정 및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법통제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한다.

④ 준법감시인은 교육·점검·감사 등 준법통제를 위한 제반 사항을 계획·수립하여 시행하고, 회사 및 임직원의 준법통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준법통제 업무를 실무적으로 통괄한다.

⑤ 법무지원팀은 전4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보좌하고, 준법감시인의 지시에 따라 준법통제 관련 업무를 실행한다.

제4조(준법감시인의 임면) ①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임면한다.

②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에게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준법감시인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,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3.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

③ 준법감시인은 전2항에 따른 해임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, 그 의견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해임 결정을 번복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.

④ 준법감시인이 해임되거나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, 대표이사는 신

속하게 신속하게 새로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준법감시인의 임기, 자격 등) ①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준법감시인은 상근하는 임원 중 선임한다.
- ③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 준법감시인이 될 수 없다.
- ④ 준법감시인은 준법 관련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.

제6조(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의무)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.

1. 준법 또는 준법경영 관련 교육과 훈련의 시행
2. 준법통제 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 및 보고
3.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·자료의 수집과 제출요구 및 진술 요구
4. 임직원에게 대한 준법 준수 요구
5. 위법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임직원의 행위에 대한 중지, 개선 또는 시정 요구
6. 본 규정 및 법령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요청
7. 준법통제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이사회 등의 출석 및 의견 진술
8.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준법감시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언 및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③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.

1.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 수행
2.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누설·유출 등 금지(재임 시 및 퇴임 후 포함)

제7조(준법감시인의 독립성) ① 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필요시 직접 보고할 수 있다.

② 준법감시인은 전1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대표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법감시인이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회사는 현재 또는 과거의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.

제8조(법적 위험의 감소, 제거) ① 준법감시인은 법적 위험의 크기, 발생 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법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주요한 법적 위험을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.

② 전1항의 법적 위험의 감소 또는 제거를 위하여 준법감시인이 협조를 요청할 경우, 관련부서 및 임직원은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

제9조(법적 위험의 관리) ① 임직원은 업무상 법적 위험과 관련된 국내·외 법규와 회사의 각종 내부 규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임직원은 본 규정, 관련 법규, 회사의 각종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또는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준법감시인 또는 법무지원팀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, 이러한 위반 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여서는 안 된다.

③ 각 관련부서와 준법감시인은 법적 위험이 확대되거나 타 부서로 이전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0조(준법 교육) ① 준법감시인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정기 준법교육 :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준법교육
2. 채용시 준법교육 : 신규채용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배치 전 실시하는 준법교육
3. 특별 준법교육 :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거나,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한 부서 또는 임직원에게 대해 실시하는 준법교육

② 준법감시인은 전1항의 교육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인터넷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준법감시인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별도로 업무상 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임직원들을 위한 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일상적인 준법지원) ① 준법감시인은 법무지원팀으로 하여금 임직원에게 대하여 상시적으로 법적 자문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.

②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이 법적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약체결 등의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지원팀과 협의하도록 지도 및 관리한다.

제12조(준법 점검) ① 준법 점검의 종류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정기점검과 특별한 법적 위험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하는 수시점검으로 한다.

② 준법감시인은 효율적인 준법점검을 위하여 부서별로 신고나 보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형화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의 신고나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다.

③ 준법감시인은 준법 점검의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, 대표이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.

제13조(내부 제보)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그룹웨어 시스템 내 게시판에 임직원이 자유롭게 내부 제보를 할 수 있는 건의함을 설치한다.

② 건의함을 열람할 수 있는 임직원은 대표이사, 준법감시인 및 법무지원팀장으로 한정한다.

③ 임직원은 건의함을 통해 자신 및 다른 임직원의 위법행위나 본 규정 위반 행위 등에 대해

여 제보할 수 있으며, 제보는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.

- ④ 회사는 제보를 한 임직원에게 그 제보를 이유로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.
- ⑤ 회사는 제보 내용이 제보자 본인에 관한 것일 경우, 향후 징계 등의 조치 시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제14조(위반 시 조치) ① 준법감시인은 법령이나 본 규정 등의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, 해당 부서 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중지·개선·시정·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관련 행위의 중지·개선·시정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,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.

- ② 회사는 법령과 본 규정 및 회사의 각종 규칙 등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준법감시인은 동일 또는 유사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대표이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. 재발방지 방안이 결정되면 준법감시인은 이를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게 통보하고,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는 즉각 해당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
제15조(정보 및 자료의 전달, 관리) ① 준법감시인은 자신의 준법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해당 부서의 임직원에게 활용가능한 형태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임직원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

- ② 준법통제에서 형성된 정보나 자료는 3년 이상 보관한다.

제16조(포상) 준법감시인은 본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회사의 손해발생 예방 및 감소 등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이나 승진을 건의할 수 있다.

제17조(세부 사항) 준법감시인은 본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정할 수 있다.